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광역교통정책국 3개 과 및 광역교통운영국 2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99. 99. ~ 99. 9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7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광역교통정책국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5년 3월 31일까지
2) 광역교통정책과	8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2025년 3월 31일까지
3) 광역버스과	8명 (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2025년 3월 31일까지
4) 광역교통경제과	7명 (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2025년 3월 31일까지
5) 광역교통운영국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5년 3월 31일까지
6) 광역교통도로과	8명 (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2025년 3월 31일까지
7) 광역환승과	7명 (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2025년 3월 31일까지